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1997. 10. 29. 판결선고	인
1997. 10. 29. 원본영수	

사 건 97가소66329 손해배상(기)

원 고 1. 조 남 피

2. 양 순 우

3. 유 의 석

4. 문 정 숙

5. 서 원 영

6. 유한회사 한국타코닉

대표이사 임 용 목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부법률사무소

1997. 10. 29. 2

기 설치등을 건의했으나 입주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의칙상 피고 책임액에서 40% 공제한다.

2.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1997. 10. 29.

판 사 변 환 칠 _____

200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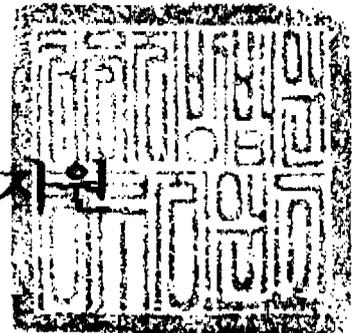
4

정본입니다.

199

1997. 11. 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원주사별 수첩

㉠

소장재수 일자 : 1997. 6. 18.

11115

소 장

원 고 1 조 남 회

2 양 순 우

3 유 의 석

4 문 정 숙

5 서 원 영

6 유한회사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임 용 목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서울 광진구 자양2동 216의 23 태양빌딩 4층
담당변호사 최 일 숙, 김 호 철, 정 영 원

피 고 신 한 영 주택관리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잠실동 313의 2

대표이사 양 춘 근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서울·광진구 자양2동 216-23 (태양빌딩 402호)
전화: 201-2266(대), 201-6051~3, FAX: 201-6054

6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조남희, 같은 양순우, 같은 유의석에게 각 금 990,000원씩, 같은 문정숙, 같은 서원영에게 각 금 690,000원씩, 같은 (유)한국타코닉에게 금 1,01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4.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재일까지는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 (유)한국타코닉의 대표이사 임용복과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서울 광진구 광장동 567에 소재하는 광나루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들이고, 피고의 사는 위 아파트를 수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관리회사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자동차 오디오의 도난

광주
민가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서울·광진구 자양2동 216-23 (대양빌딩 402호)
전화: 201-2266(대), 201-6051~3, FAX: 201-6054

7

원고들은 모두 소나타Ⅲ등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바, 1997. 4. 11. 19:00경 내지 4.12 06: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시켜 두었던 자동차에서 카오디오를 도난당하였습니다. 원고 조남희, 같은 양순우, 같은 유의석, 같은 (유) 한국타코닉의 카오디오에는 CD프레이머가 부착되어 있었고 원고 문정숙, 같은 서원영의 카오디오는 CD가 부착돼 있지 않은 보급형이었습니다.

나. 피고 불법행위 책임

피고는 광나루현대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주택관리업체로서 피고 및 그 소속 직원들은 아파트 내 경비 관리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령 제 3조2항 피고는 그 소속 직원들에게 아파트 경비 업무 등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 령 제42조의 2).

그런데 피고회사 소속 직원인 관리소장 오세영과 97. 4. 11. 근무하였던 경비반장 오재현, 경비 이희운, 김한기, 박춘형, 어한경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아파트내 경비 업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원고들을 포함하여 모두 10대의 자동차에서 카오디오를 도난당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고 도중에 발견하지도 못하여, 4.12. 아침에 피해자들이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내려가서야 도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카오디오를 자동차에서 분리시켜 타처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분리와 운반에

- 팩스상태가 안좋아 다시 타자친 부분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할 것인바, 범인들은 아마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10대의 카오디오가 한꺼번에 도난당한 412.도난사고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및 그 소속 직원들로서는 아파트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검사하여 주민의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주민의 차량이 아닐 경우에는 주민중 어느집을 방문하는지 확인한 후 방문카드를 작성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게을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광나루현대아파트는 자동차의 입출구가 단 1개뿐이어서 아파트에 출입하는 차량을 감시하기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고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아파트 정문 자동차 출입구에 설치된 체인을 시정하여 출입하는 차량이 있을 때마다 주민임을 확인하고 열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체인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카오디오를 도난당한 차량중 원고 양순우, 같은 유의석, 같은 (유)한국타코닉의 소유차량에는 자동차정보장치가 되어 있어 제3자의 손이 닿을 경우 정보장치가 울리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소속 직원들이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범인들을 발견하고 도난을 방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 소 결 론

위와같이 피고 및 그 소속 직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카오디오를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 및 피용인인 경비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

공중
인가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서울·광진구 자양2동 216-23 (대양빌딩 402호)
전화: 201-2266(대), 201-6051-3, FAX: 201-6051

9

나.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카오디오의 손해

원고들의 카오디오의 가격은 일반보급형이 금 480,000원이고 오니오 커버가 금 10,000원이며, CD가 부착되어 있는 카오디오는 금 780,000원이고 커버는 금 10,000원이며, 원고 (유)한국타코닉의 소유차량인 마르샤의 경우 커버가 금 30,000원입니다.

나. 위자료

원고들은 97.4.12. 아침 9시가 ^{경쟁이}넘어서야 카오디오를 도난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리소를 찾아가 상황을 문의하였는 바, 피고 소속 직원들은 이미 2시간 전에 ^{원고 앞을 새벽 6시 관리하던 중에 도난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경계할 때 알려}도난사실과 대상차량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으며, 도난차량을 확인하려는 원고 조남희에게 그 대상차량을 숨기려고만 하였습니다. 또 도난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들은 그 전에도 카오디오의 도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한꺼번에 여러대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관리소장 오세영에게 대책을 문의하려고 하였는바, 동인은 4.2. 정해진 퇴근시간인 오후 1시보다 훨씬 전에 퇴근을 하여 자리를 비웠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월요일인 4.14.이 되어서야 위 오세영에게

공정
인가 **법무법인 동북종합법률사무소**

서울·광진구 자양2동 216-23 (태양빌딩 402호)
전화: 201-2266(대), 201-6051-3, FAX: 201-6054

10

사고당일의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문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원고들이 위 오세영등 관리소측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위 오세영등은 사고사실을 피고측에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말만을 반복하면서 계속 말을 바꾸었고, 카오니오 도난사건의 경우 다른 아파트 단지의 관리회사측의 보상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측의 성의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원고들에게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회의를 통해서 답변을 하겠다는 말로 일관하다가 급기야는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부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들은 약 한달가량 오디오가 분리되어 쉼한 흉한 모습의 차량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을 중단하였으며, 피고와 그 소속 직원들의 무책임하고도 불명확한 태도와 1개월에 세대당 69,000원상당의 일반 관리비(이는 아파트 경비등의 급여로 지출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경비들이 아파트 경비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지출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임)를 내면서 아파트 관리를 위탁한 피고측에 대한 불신감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큼니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는 적은 금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나 일용 원고들 각 금 2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위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의 1 ~ 5 | 각 주민등록등본 |
| 6 | 법인등기부등본 |

홍중
인가 법무법인 동북종합법률사무소

서울·광진구 자양2동 216-23 (태양빌딩 402호)
전화: 201-2266(대), 201-6051-3, FAX: 201-6054 //

1. 갑 제2호종의 1 ~ 6

각 자동차등록증

1. 갑 제3호종의 1 ~ 6

각 도난신고접수확인서

1. 갑 제4호종

위, 수탁관리계약서

1. 갑 제5호종

견 적 서 X